

## 트러스톤멀티자산운용(주)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및 이행 지침상의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

###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6백만원)

###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0%(000명)	100%(1명)	153%(9백만원)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당사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 자체 관리 IT 업무시스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객 정보를 보관,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임직원수가 적어 정보보호부문인력이 정보기술인력을 겸하고 있습니다.

###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6. 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당사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영위하지 않아, 침해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낮으며, 현재 금융ISAC와 연계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금융ISAC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본 공시 내용은 홈페이지의 [공시정보]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9.01.02.

트러스톤멀티자산운용(주)  
대 표 이 사 조 병 준

